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2020231 판결 [점유회수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20202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5508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5. 2. 13.

판결 선고 2015. 3.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5508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연립주택재건축아파트 201호를

인도하고, 28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G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토목, 골조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0.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G의 점유는 E를 위하여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G은 2011. 5.경 E에 유치권을 직접 행사할 것을 통보하고 그 점유를 E에 이전해 주었고, E의 사실상 운영자인 원고는 이를 점유하다가 E로부터 한솔파로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이후에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이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12035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됨을 기화로 G과 모의하여 G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하는 불법행위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 2억 8,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204조 제1항 또는 제760조, 제75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3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또는 점유보조자인 G를 통하여 점유한 유치권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갑 제2호증의 3의 G의 진술과 피고가 2011.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독자적인 점유를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E의 대리인으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G의 진술이 담긴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G로부터 대가를 받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직접 또는 G를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승계집행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이와 모순된 내용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기도 하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는 2011. 7. 27. 원고에게 'G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1. 7.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독자적으로 점유하는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피고가 알았거나, 피고가 G와 모의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이 사건 확정판결 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최영락